

2-2-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2019.12.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31조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환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교육과정이란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체계로서,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수, 이수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교과란 일정한 특성을 갖는 교과목들을 묶는 분류로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성된다.

③ 교육과정 개발이라 함은 대학의 건학이념 및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및 요구분석, 교육목표 및 핵심·전공역량 설정, 교과목 도출 등의 타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교육과정의 개편이라 함은 교과목의 폐지, 교과목의 신설, 교과목의 변경(교과목명, 학점, 이수학기, 시수 등)에 의하여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당해 연도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⑤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수, 이수시기들을 정하여 교육과정 내에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⑥ 교육과정 환류란 교육과정 평가 결과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제3조(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본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합리적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0.3.11.>

1. 교육과정위원회
2. 교육성과평가위원회
3. 학부 전공교육과정위원회
4.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제4조(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3.11., 2022.8.22., 2023.2.28.>

1. 교육과정위원회: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

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고, 간사는 교무처 담당으로 한다.

2. 교육성과평가위원회 : 위원회는 미래교육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기초교양교육원장, 학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교육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미래교육센터에서 관장하고, 간사는 미래교육센터 담당으로 한다.

3. 학부 전공교육과정위원회 : 위원회는 학부 소속 전임교수,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산업체 인사는 1명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전공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를 위한 조직은 학부의 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교양교육과정위원회 : 위원회는 교양교수와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초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기초교양교육원이 관장하고, 간사는 기초교양교육원 담당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총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제5조(교육과정위원회 임무)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본교 전체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요구분석, 설계, 편성의 적절성 심의
2.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심의
3. 전공교육과정의 학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심의
4.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이수규정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
5.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체계성 심의
6.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 개편(폐지, 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7. 교양, 전공교과목 성적평가 도구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심의
8.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심의
9.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10. 학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본교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제6조(교육성과평가위원회의 임무) 교육성과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1.>

1.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

2.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한 환류계획 수립
3. 교육성과 기반 교육개선계획 수립
4. 기타 위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핵심역량 함양에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이에 따른 요구분석, 설계, 편성, 운영,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심의
2. 교양 교과목의 개편(폐지, 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3. 교양필수와 선택의 구성비 심의
4. 핵심역량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심의
5.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전공 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 학부 전공교육과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역량 함양에 필요한 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이에 따른 요구분석, 설계, 편성, 운영,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심의
2. 전공 교과목의 개편(폐지, 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3. 학년별, 학기별, 이수구분별, 전공역량별 교과목 배정 사항 심의
4. 전공필수와 선택의 구성비 심의
5. 심화전공 및 부전공 학점 심의
6. 학부 비교과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4장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제9조(교육과정 개발)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1.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교육목표
2.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3. 산업동향(국가산업, 지역사업) 및 고용동향
4. 인력수급전망
5. 산업체(관련기관) 현황 및 요구
6. 학문동향
7. 국가 자격 요구
8. 졸업생, 재학생의 진로(직무)분석 및 요구
9. 타대학 우수사례
10. 전년도 교육과정 분석 및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②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은 대학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각 교과목별로 핵

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수업계획서에 표시한다.

④ 전공교육과정은 전공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및 전공역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⑤ 전공교육과정은 각 교과목별로 전공역량과의 연계성을 수업계획서에 표기한다.

⑥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이라 함은 교과목의 폐지, 교과목의 신설, 교과목의 변경(교과목명, 학점, 이수학기, 시수 등)에 의하여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당해 연도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②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개편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문적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와 학부 전공의 설치와 폐지,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년 1회에 한하여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수 교과목을 폐지할 경우에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양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또는 전공교과목을 교양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할 수 없다.

④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정기개편을 위해서는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5장 교육과정 편성 체계

제11조(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구현
2. 사회의 변화와 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배양
3.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조직)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교육과정개발(개편)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발·심의한 안을 교무처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은 각 학부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 및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발·심의한 안을 교무처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절차)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을 위해 교무처는 교육과정 환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교육과정 개편(개발)지침 마련
2. 교양 및 전공학부는 교무처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편(개발)지침을 근거로 교육수요자 요구 및 만족도 조사, CQI보고서 분석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

3. 교양 및 전공학부는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학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의 교육과정위원회 상정
4. 대학의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양 및 전공 학부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5.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편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후 최종 확정

제14조(교육과정 편성 기본원칙)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세칙」에 따른다.

1. 교양교육과정은 건학이념 및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 편성
2.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
3. 교양교육과정의 환류를 위한 요구분석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성
4. 교양교과목의 개설과 폐지, 변경은 핵심역량별 교과목구성, 학점이수체계 등 전반적 검토

②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1. 전공교육과정은 건학이념 및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과 연계 편성
2. 전공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전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
3. 전공교육과정의 환류를 위한 요구분석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편성
4. 교과목 배치는 기초에서 심화로 학기별, 학년별 계열성을 고려하여 편성
5. 전공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
6. 전공교과목의 개설과 폐지, 변경은 전공능력별 교과목구성, 학점이수체계 등 전반적 검토
7. 전공분야의 평가인증기준 등 학부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8. 전공교과목은 심화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심화전공 교과목은 15학점 이내로 편성
9. 전공교과목은 이론교과, 이론 및 실습(실험·실기교과 포함)병행교과 실습교과로 구분
10.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편성하며,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직과목에 편성된 학점 모두 이수

제15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으로 구성
 2. 전공교육과정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특화 과목으로 구성
- ②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외에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부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개설한다.
- ③ 타 학부 전공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통해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④ 전항의 구분에 따라 이수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제16조(교육과정 운영조직) ① 교무처는 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무 부처이다.

② 교무처는 심의·의결된 교육과정 편성안을 기초교양교육원, 전공 학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하며, 편성된 교육과정을 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③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3.11.>

제17조(교육과정 관리) ① 교양 및 전공학부는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매학기 개설과목을 구성하여 관련위원회 또는 학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개편 및 과목 변경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육과정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② 복학생은 복학 이후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단,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제19조(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법컨설팅 등 교수역량강화 지원
2. 교수·학습 질 관리 체계 구축
3. 교수학습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수업환경 개선
4. 학습자중심 교수학습법 강화
 - 가.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및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 나. 팀기반 학습(Team Based Learning)
 - 다.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 라.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 마.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 바. 시뮬레이션 러닝(Simulation Learning) 등

제7장 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

제20조(교육과정의 평가) ① 교양 및 학부에서는 매학기 수업종료 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교양 및 학부에 제출하는 교과목별 CQI보고서와 교양 및 학부차원의 교육과정 개선 계획 및 개선실적을 포함한 교육과정운영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는 취합한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③ 교무처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센터에 제출한다.

④ 교양 및 학부에서는 매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교육과정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
2. 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실적
3. 내외환경 및 요구분석(산업계, 졸업생, 재학생)
4. 개선 계획
5. 기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사항

⑤ 교양 및 학부에서는 교육과정 평가보고서를 교무처와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1.>

제21조(교육과정의 환류) ① 교육과정 환류를 위한 진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1.>

1.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운영결과보고서 및 교육과정평가보고서, 학습자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교육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교무처에 제출<개정 2022.8.22.>

2. 교무처는 제1호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점 검토 후 종합 개선방안을 도출<개정 2022.8.22.>

3. 교무처는 교육과정 종합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행·재정·정책적 조치내용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총장의 승인 후 확정

4. 교무처는 다음연도 교육과정 개편(개발) 기본계획수립에 환류 내용을 반영하고, 교양 및 학부 기타 관련부서에 피드백함 후 관련내용 교육과정 개선 반영

②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센터는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데이터를 환류에 적용한다.

1. 산업계 및 사회요구분석, 내외 환경분석, 학문동향분석,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졸업생 진로분석 등 반영

2.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3. 외부 기관의 학습자 분석결과 반영

4. 핵심역량과 전공역량 분석결과 반영

5. 교양과 전공 학습성과 성취결과 반영

6. 기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전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환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